

산림청 공고 제2018 - 73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21.

산 립 청 장

지리적표시 등록 공고

1. 등록일 및 등록번호

가. 등록일: 2018. 3. 21.

나. 등록번호: 제56호

2.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가. 성명(법인은 명칭): 밀양대추연합영농조합법인

나. 주소(법인은 영업소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 359

다. 전화번호: 055-352-1374

라. 구성원 및 구성원별 재배현황

구성원	재배 현황	생산계획량 (지리적표시품)
291명	184ha	1,486ton (1,009)

3.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가. 등록대상 품목: 대추

나. 품목명 분류기준: HS 0810.90-3000(신선한 대추), HS 0813.40-2000(건조한 대추)

다. 등록명칭

1) 한글명: 밀양대추

2) 영문명: Miryang Daechu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가. 대상 지역범위: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밀양시 일원

나. 대상지역 지도 등 상세내역: '붙임1' 참조

5.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가. 명성(인지도 조사결과, 보도내용 등): '붙임2' 참조

나. 역사성: '붙임2' 참조

6. 등록자의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가. 자체 품질기준: '붙임3' 참조

나. 품질관리계획서: '붙임4' 참조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밀양대추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는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밀양시 일원으로 함.

□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밀양시 지역은 한반도 남단, 경상남도 북동부에 위치한 내륙지역으로, 동쪽으로는 양산시·울산광역시, 남쪽으로는 김해시·창원시, 서쪽으로는 창녕군, 북쪽으로는 경북 청도군과 인접하고 있는데, 동서간 38km, 남북간 24.5km에 달하며, 면적은 798km²임

* 2개 읍, 14개 면, 128개 법정리(면적 : 798km²)

□ 인접지역과의 구분되는 특성

- 밀양시 지역은 6~7월의 평균 기온은 24.2℃로(평균 최고기온 : 29.6℃, 평균 최저기온 : 19.9℃) 높은 온도 조건을 가지고 있어 대추의 결실량이 많고 당도 및 영양이 풍부한 밀양대추의 생산이 가능한 특성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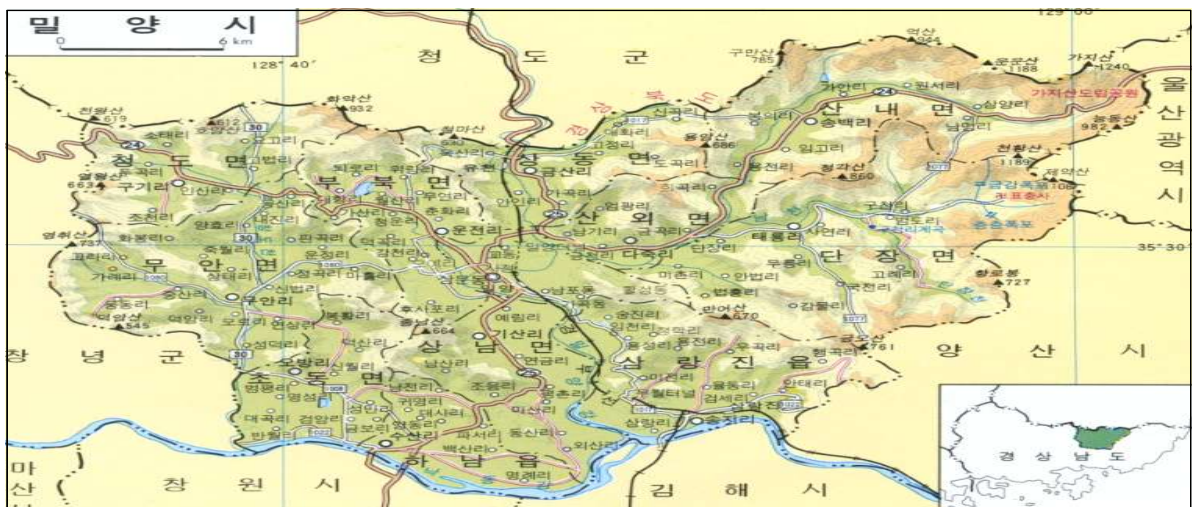
《표 1》 국내 대추 생산지별 개화·착과기(6~7월) 기온 특성 (2006~2015년)

단위(℃)

구분	평균 기온	평균 최고기온	평균 최저기온
밀 양	24.2	29.6	19.9
청 도	23.7	29.1	19.1
보 은	20.5	25.3	16.6
군 위	23.3	29.4	18.2

※자료/ 『기상자료』, 기상청·각 지자체

□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표시



《그림1》 밀양시의 위치 및 행정구역

밀양대추의 명성 및 역사성

1. 인 지 도

- ‘밀양대추’의 소비자 인지도 조사를 공신력 있는 리서치전문기관에 의뢰·실시
- 인지도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9.0%가 밀양대추를 아는 것으로 조사
 - 인지한 경로는 30.0%가 ‘주변사람을 통해’, ‘TV보도를 통해(17%)’, ‘신문, 잡지, 인터넷을 통해(28%)’, ‘현지 관광 및 축제(9.8%)’ 및 ‘홍보 광고물 또는 행사장에서 보고(13.0%)’, 기타 순으로 나타남

2. 유 명 성

- 전국 임산물생산조사(2014년)에 따르면 밀양대추는 전국 생산량의 약 14.3%(전국 3위)를 차지하는 주산지임
- 행정자치부가 조사한 『전국 향토자원관련 현황』에 밀양시 지역의 지역 특산품인 ‘대추’가 선정(2006)
- 「귀하께서는“대추”하면 어느 지역이 생각나십니까?(중복응답)」라고 묻는 질문에 총 응답자의 34.0%가 ‘밀양시’라고 답하는 등 전국의 주요 소비층에게 밀양대추가 널리 명성을 가지고 있음
- 지역의 대표축제로 ‘밀양대추축제’를 수년에 거쳐 10월에 개최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적을 통해 밀양대추의 우수성이 알려져 있음
 - * 지역특산물 체험여행, 건강여행, 여의주를 찾아서 등
 - 우리도 간다! 밀양 대추가 왔어요 (MBC 전국시대, 2015.11.10.)
 - 대통령 추석 선물은 밀양 대추 (JTBC뉴스, 2014.9.6.)
 - 밀양 생대추 인기 (아시아뉴스통신, 2015.10.25.)
 - 밀양 대추축제, 오늘은 우리들의 세상 (뉴시스, 2015.10.24.)
 - 400년 전통 이어온 밀양대추 수확 (연합뉴스, 2015.09.23.)

- 밀양시, 명품대추생산을 위해 구슬땀 흘려 (아주경제, 2015.06.03.)
- 명품 밀양 단장대추 수확 (연합뉴스, 2011.10.04.)
- 밀양 특산물 대추 맛 보러 오세요 (연합뉴스, 2008.10.25.)

3. 역 사 성

- 밀양대추는 1899년(고종 36년) 저술한 ‘밀양읍지’에 밀양대추 관련 기록이 전해오는 것으로 보아 밀양시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대추’가 많이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충북도농업기술원 대추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까지 품종으로 명명된 것은 없고 국내 대추 주산지의 명칭을 붙였으며, 밀양은 고례대추로 대표적인 주산지로 명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 예로부터 밀양시 지역 내에서도 대추가 많이 생산되었다 하여 ‘평리산 대추마을(現 밀양시 단장면 고례4길)’이라 명명된 지명 유래
- 약 100여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밀양장의 주요 거래 품목으로 ‘대추’가 기록되어 있는 등 예로부터 밀양시 지역에서 대추가 생산되어 왔음을 확인 할 수 있음<『밀양(밀양장)』, 한국콘텐츠진흥원>
- ‘우리나라 대추의 주산지로 밀양시 지역이 기록’된 1970년 10월 20일 매일경제 신문보도(언론보도) 등 문헌자료

자체품질기준

이 기준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품으로 등록된 밀양대추(이하 '지리적표시품')의 생산에서부터 출하·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조합원(생산자) 및 밀양대추연합영농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 준수할 자체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밀양대추의 명성·품질 및 기타 특성을 유지·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가. 생산기준

1.1. 대추나무 재배 및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고, 대추과원의 조성에서 대추 출하단계까지 밀양시농업기술센터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월별	1~3	4	5	6	7	8	9	10	11~12	
생육 단계	휴면기	발아기	전엽기	신초생장기	개화기	과실비대기		과실착색기	수확기	낙엽 및 휴면기
주요 작업	전정	가지유인	하계전정		비배관리		수세유지	수확세척건조	밧거름시용	

《그림 7.1》 지리적표시품 재배 과정도

1.2. 과원의 조성 및 재식

1.2.1 과원은 유효 토심이 깊고 물 빠짐이 우수한 토지로 선정하고, 유기질 비료 시비 등으로 토양을 대추 생육에 적합하도록 조성·관리한다.

1.2.2 묘목

- 1) 병해충이 없어야 하며 특히 빗자루병에 감염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2) 묘목의 길이가 100cm이상이고, 직경은 1cm이상이어야 하며 상처가 없어야 한다.
- 3) 가는 뿌리가 많고 원뿌리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 4) 밀양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하고 있는 묘목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5) 밀양시 관내에서 재배·생산된 것으로 품종은 밀양시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 6) 밀양시 관내 생육 중인 대추나무의 순수 맹아 번식을 통하여 묘목을 생산하여야한다.

1.2.3 재식

- 1) 재식거리는 5×6m 정도로 10a 당 40주 내외로 재식하되 재배지 입지, 토양 특성 등의 재배 요건에 따라 생산자가 조정할 수 있다.
- 2) 동해나 건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흙으로 성토하여 보온한다.
- 3) 묘목을 심을 때에는 구덩이의 30cm 깊이에 놓고 뿌리를 잘 펴 놓은 후 완숙퇴비와 흙으로 메우면서 충분히 물을 주고 물이 완전히 스며든 후 흙과 미숙퇴비를 고루 섞어가며 메운다.

1.3. 과원의 관리

1.3.1 간벌 및 정지·전정

- 1) 전정은 12월 중순 무렵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하되 성장습성이나 다수확 및 작업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작업한다.
- 2) 결실을 촉진하고 병충해 전염원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개화전후 5월 하순~6월 하순사이 절순 및 도장지를 제거한다.

1.3.2 시비는 수령, 토양조건, 수분, 품종, 착과상태, 생육상태 등에 따라 밀양시농업기술센터 및 농촌진흥청에서 추천하는 시비량을 기준으로 적량을 시비한다.

《표 7.1》 대추 시비량

구 분	당시비량(g/주)					성목(6년생 이상 · kg/10a)
	1년생	2년생	3년생	4년생	5년생	
질 소	50	100	200	450	560	12
인 산	30	70	140	210	380	8
칼 리	40	80	160	360	440	10

1.3.3 병충해 방제

- 1) 고품질의 안전한 대추 생산을 위하여 병해충을 자연친화적인 방제방법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방제한다.
- 2) 농약을 사용할 때에는 농약관리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적기에 적정약제를 적정량 살포한다.

- 3) 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지력을 증진시키고 토양의 성질을 개량하여 대추나무의 건전한 생육을 도모한다.

1.4. 수확

- 1.4.1 수확 시기는 9월 하순부터 10월 사이에 과면의 60~70%가 착색되었을 때부터 당도가 높고 최대한 많이 착색된 것을 먼저 수확한다.
- 1.4.2 대추 전용 수확기 등으로 가지 잎줄기를 흔들어 수확하는데 과원 바닥에 부직포 등을 깔아 대추가 상하지 않도록 하고 이물질을 최소화 한다.
- 1.4.3 건전과로의 이병을 방지하기 위해 탄저병, 이병과 등은 조기에 제거한다.

1.5. 세척 및 건조 (건대추)

- 1.5.1 건대추는 생대추의 세척·건조과정을 거쳐야 한다.
- 1.5.2 건대추는 대추 건조기가 있는 조합법인 및 조합법인 지정시설에서만 건조한다.
- 1.5.3 건대추는 대추 건조기에서 50℃ 내외 를 유지하며 약 48시간동안 건조한다.
- 1.5.4 건조 상태에 따라 건조기의 온도를 조절하여 건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
- 1.5.5 건조기는 사용 전에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완전히 마른 후 사용한다.
- 1.5.6 건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깨끗이 청소한 후 완전히 밀폐하여 보관한다.
- 1.5.7 세척과정의 위생 관리기준
 - 1) 세척에 사용하는 물은 1년에 1회 이상 음용수 기준에 부합여부를 검사하고, 그 증빙자료를 조합법인에 보존한다.
 - 2) 세척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완전히 건조시켜 비닐 등 불투수성 재질로 만든 덮개로 덮어 빗물이나 먼지 등의 오염원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보관한다.

1.6. 선별 (생대추, 건대추)

지리적표시품의 선별·건조·포장 등의 전 상품화과정은 조합법인 및 조합법인 지정시설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1.6.2 선별과정

- 1) (1단계) 선별작업대에 올려 놓고 크기에 따라 3등급(특품, 상품, 보통품)으로 선별한다.
- 2) (2단계) 등급기준에 따라 특품(별초와 특초)을 구분·선별한다.
- 3) (3단계) 상품과 보통품 중에서 열과 등 등외품을 골라낸다.
- 4) 선별작업대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이나 오염이 적은 재질로 제작된 것을 사용하며, 선별작업 전·후 작업대를 항상 깨끗이 하여야 한다.
- 5) 선별작업을 하지 않을 때에는 비닐 등 불투수성 재질로 만든 덮개로 덮어 빗물이나 먼지 등의 오염원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보관한다.

1.7. 저장 (건대추)

1.7.1 건대추는 비닐포장대 등에 완전 밀폐하여 저장한다.

1.7.2 건대추 저장고 내의 온도는 0~1℃ 내외로 관리한다.

1.7.3 건대추는 조합법인 및 조합법인 지정시설에만 저장하여야 한다.

1.8. 조합법인 지정시설 및 관리의 기준

1.8.1 조합법인 지정 시설 기준

- 1) 조합법인 지정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밀양시의 협의를 거쳐 조합법인의 승인을 얻어야하고,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세척·건조·선별포장시설 등은 다음과 같은 기본설비를 갖춰야한다.

(1) 입·출고 설비	(2) 세척설비	(3) 건조설비
(4) 선별작업대	(5) 저장설비	(6) 포장기

나) 저장시설은 온도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조합법인은 지리적표시품 생산시설(조합법인 지정시설)로 지정된 시설현황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변동이 있을 시에는 이를 밀양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1.8.2 시설관리기준

- 1) 조합법인이 지정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은 시설·설비의 불결이나 고장 등에 의한 대추 품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2) 입고 물량을 당일에 확인하여 입고량 기록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월1회 이상 조합법인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품질(등급)기준

- 2.1. 지리적표시품의 품질(등급)기준은 조합법인에서 밀양대추의 품질기준에 알맞도록 자체적으로 정한 품질기준에 따른다.
- 2.2. 지리적표시품은 밀양대추(생대추, 건대추) 지리적표시품 품질기준(등급기준)의 특품(별초·특초), 상품(상초)에 부합하는 것만으로 한다.

《표 7.2》 생대추의 등급기준

항 목	등 급		특 품		상 품	보 통 품
	별 초	특 초	상 초	보 통 초		
고 르 기	무계구분표상 무계가 다른 것의 혼입이 5% 이하인 것	무계구분표상 무계가 다른 것의 혼입이 5% 이하인 것	무계구분표상 무계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 이하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색 택	품종고유의 색택으로 착색된 정도가 균일한 것	품종고유의 색택으로 착색된 정도가 균일한 것	품종고유의 색택으로 착색된 정도가 균일한 것			
모 양	품종 고유의 모양이 뛰어나며 균일한 것	품종 고유의 모양이 뛰어나며 균일한 것	품종 고유의 모양이 양호하며 대체로 균일한 것			
크 기 (길이, mm)	28 이상	26 이상 ~ 28 미만	24 이상 ~ 26 미만			24 미만
무 게	무계 구분상 ‘대’ 이상인 것	무계 구분상 ‘중’ 이상인 것	적용하지 않음			적용하지 않음
육 질/맛	과피가 얇고 육질이 조밀하여 저작감이 좋으며 고유의 단맛이 있는 것	과피가 얇고 육질이 조밀하여 저작감이 좋으며 고유의 단맛이 있는 것	과피가 얇고 육질이 조밀하여 저작감이 좋으며 고유의 단맛이 있는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가벼운 결점	없는 것		5%이하			10%이하

- <참조> (1) 크 기: 생대추 상태의 크기를 말한다.
 (2)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비율을 말한다.
 (3) 가벼운결점 : 병충해과, 상해과(열과, 자상, 압상 등)의 정도가 경미한 것

<무게 구분>	구 분 / 호 칭	대	중	소
	1개의 무게(g)	12이상	8이상 12미만	4이상~8미만

- ※ 산림청 고시 제 2014-21호 임산물표준규격 대추(생대추)의 등급규격에 따르면 크기 항목 기준으로 24mm이상의 대추를 특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상품과 보통품은 적용하지 않고 있음.
 ※ 조합법인은 산림청 고시 임산물표준규격의 대추(생대추) 규격의 ‘특품’ 크기 기준인 24mm 이상의 조건을 부합하는 것만을 지리적표시품(특품, 상품)으로 표시할 계획임.

《표 7.3》 건대추의 등급기준

항목 \ 등급	특품		상품	보통품
	별초	특초	상초	보통초
고르기	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5%이하인 것	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5%이하인 것	크기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이하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모 양	품종 고유의 모양을 갖추고 윤기가 뛰어나며 건조상태가 양호한 것	품종 고유의 모양을 갖추고 윤기가 뛰어나며 건조상태가 양호한 것	품 종 고유의 모양을 갖추고 윤기가 나며 건조상태가 적당한 것	품 중 고유의 모양을 갖추고 윤기가 나며 건조상태가 적당한 것
크 기 (길이, mm)	24 이상	19 이상 ~ 24 미만	14 이상 ~ 19 미만	14 미만
수분(%)	18% 이하			적용하지 않음
가벼운 결점(%)	1% 이하인 것		5% 이하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p><참조> (1) 크 기 : 건대추 상태의 크기를 말한다. (2) 백분율(%) : 전량에 대한 개수비율을 말한다. (3) 가벼운 결점 : 미숙과, 열과, 병충해과 기타 이물이 들어있거나 변색이 심한 것 등으로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p>				

다. 포장 및 표시기준

3.1. 포장기준

- 3.1.1 유통과정에서 대추의 손상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강구해야하며, 포장재는 골판지 등을 사용한다.


3.1.2 포장단위는 300g, 1kg, 2kg, 3kg, 5kg, 7kg, 10kg 단위로 포장되어 출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판매처 또는 시장유통조건에 따라 포장단위와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3.1.3 유통 과정에서 상품화를 마친 대추의 재 포장 우려가 있는 벌크포장 제품은 지리적표시품에서 제외한다.

3.2. 표시기준

3.2.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한 [별표15]에서 정한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및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기준을 준수한다.

3.2.2 등록명칭은 ‘밀양대추’ 라고 표시하고 영문 등록명칭은 [Miryang Daechu]라고 표시한다.

	<p>등록명칭: 밀양대추 [Miryang Daechu] (생대추, 건대추) 산림청 지리적표시등록 제56호 생산자: 밀양대추연합영농조합법인 주 소: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 359 전화번호: 055) 352-1374 팩스: 055) 352-1347</p>
<p>이 상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가 보호되는 제품입니다.</p>	

3.2.3 표시방법

- 1) 지리적표시품으로 등록된 밀양대추를 적극 홍보하고, 일반 상품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포장재 전면 또는 측면 등에 소비자의 눈에 띄는 좋은 위치, 식별하기 쉬운 크기로 표시한다.
- 2) 크기: 포장재 크기에 따라 표시 크기를 가감할 수 있다.
- 3) 위치: 포장재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 표시가 어려울 경우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4)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한다.
- 5) 포장하지 않고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지리적표시표시품의 표지를 인쇄 또는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엔 표지 도표와 등록명칭만 표시할 수 있다.

3.2.4 일괄표시사항

-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 및 관련 제 기준을 따른다.
- 2) 표시사항 : 다음 사항을 아래 양식에 따라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일괄 표시한다.
- 3) 표시방법 : 일괄표시사항의 기재는 다음에 정한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가) 상품명 : ‘밀양대추(생대추) 혹은 밀양대추(건대추)’ 로 표시
 - 나) 생산지 : ‘경상북도 밀양시’ 로 표시
 - 다) 생산자 : 밀양대추연합영농조합법인, 조합원명 기재
 - 라) 무게 : 300g, 1kg, 3kg, 5kg, 10kg, 15kg 등 (실 무게)
 - 마) 보관방법 : 1~5℃ 냉장 보관
 - 바) 교환방법 : 구입처 및 조합법인

3.2.5 허위표시 등의 금지

-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관련 법에 명시된 ‘허위표시 등의 금지사항’ 과 식품위생법, 정관 등에 제시된 표시금지사항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2) 예
 - 가) 정부 또는 관련 공인기관의 수상·인증·선정·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
 - 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최고” · “가장 좋은”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라. 생산이력추적관리

4.1 원산지 관리

- 4.1.1 타 지역에서 생산된 대추가 지리적표시품에 유입되지 않고, 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합원(생산자) 및 조합법인은 단계별로 문서에 기재 및 관리하여야 한다.
- 4.1.2 조합원(생산자)은 지리적표시품의 생산유통 등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리적표시품 생산량 기록대장’ [별지 제1호 서식]과 ‘지리적표시품 출하량 기록대장’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관계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4.1.3 조합법인은 ‘지리적표시품 판매량 기록대장’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판매전에 반드시 품질조사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4.2 지리적표시품 구분 관리

- 4.2.1 지리적표시품은 자체품질기준에 부합하는 대추를 판매하여야 하며,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대추를 지리적표시품으로 판매하거나 혼입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 4.2.2 지리적표시품은 일반품과 섞이지 않게 별도로 구분하여 저장·보관한다.

4.3 지리적표시 포장재 관리기준

- 4.3.1 지리적표시품 포장재 제작은 조합법인이 조합원의 생산계획량, 재배면적을 감안하여 조합법인이 일괄제작하여야 한다.

- 4.3.2 포장재가 제작되면 조합법인은 사전에 파악한 지리적표시품 생산계획량에 따라 개인조합원, 단체조합원 별로 지급하고, 지급된 포장재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한다.

- 4.3.3 조합법인은 매년 지리적표시품 포장재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포장재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지리적표시제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자체 품질기준의 개정과 보완

- 5.1 지리적표시제도나 해당 행정기관의 정책, 기준 등이 변경될 때에는 이의 내용에 따라 이 자체품질기준을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 5.2 본 자체품질기준의 개정·보완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서

이 계획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밀양대추 지리적표시품’ (이하 ‘지리적표시품’)의 명성·품질 및 기타 특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밀양대추연합영농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 수행할 품질관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생산계획에 따른 단계별 품질관리 계획

1)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1.1 계획의 수립

조합법인은 자체품질기준에 부합되는 지리적표시품 생산을 위하여 밀양시청 대추 지리적표시 담당자와 협의과정을 거쳐 매년 3월 말 까지 품질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1.2 이사회회의 의결

품질관리계획서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한다.

1.3 포함사항

1.3.1 품질관리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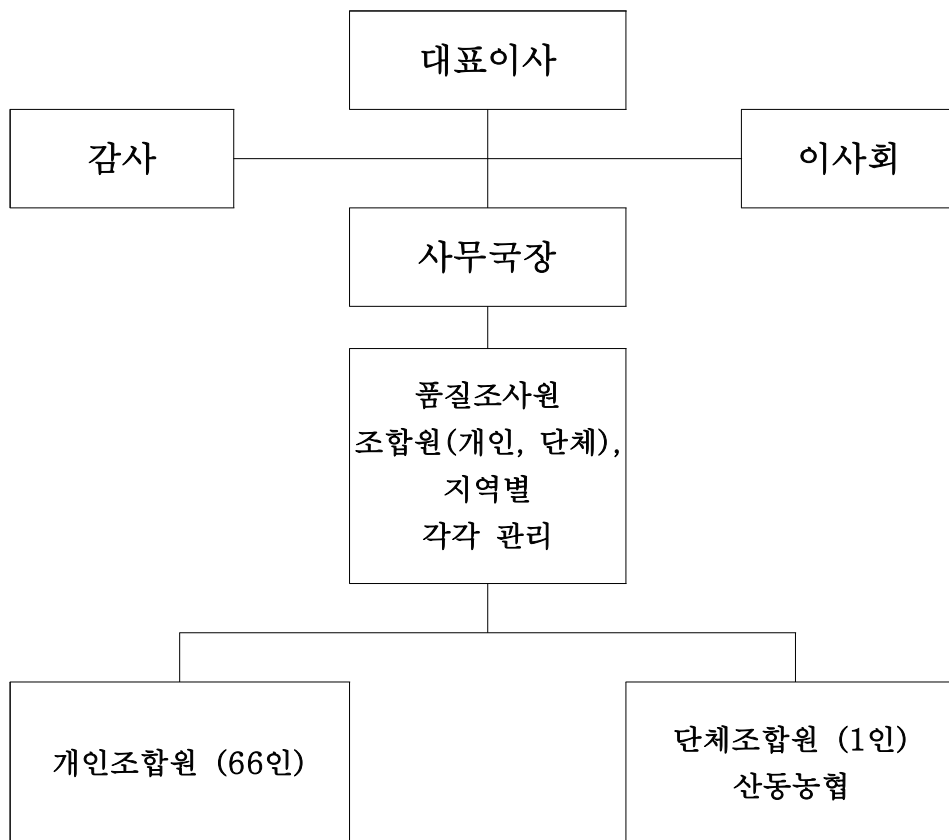
- 1) 조합원의 구성 현황과 증감 내역
- 2) 품질관리를 위한 이사회와 품질조사원 현황 및 변동 내역
- 3)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계획과 증감 내역

4) 품질관리 실적과 계획

- 가) 전년도 지리적표시 등록 추진실적과 비교
- 나) 품질관리 인력 현황
- 다)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과 장비현황 및 확보계획
- 라) 지리적표시품의 판매 방법별 · 판매처별 판매실적
- 마)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실적(조사실적, 위반내역, 위반자에 대한 조치)
- 바) 자체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실적과 계획
- 사) 문제점과 대책 및 향후 추진 계획

2) 품질관리 조직 및 인력

2.1 품질관리 조직도



《그림 8.1》 품질관리 조직도

2.2 품질관리 인력

《표 8.1》 품질관리 인력 구성

구분	대표이사	이사	감사	사무국장	품질조사원
인원(명)	1	3	1	1	16

※ 조합법인은 밀양대추 지리적표시품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조사원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별 생산량 및 생산자수를 감안하여 밀양대추 생산량의 대부분의 차지하고 있는 단장면지역을 중심으로 품질조사원 15인을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단체조합원의 지리적표시품 품질관리 및 생산관리를 위한 산동농협 2인을 품질조사원으로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리적표시품 품질조사원은 연1회 이상 밀양시에서 주관하고 조합법인에서 주최하는 지리적표시품 품질조사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품질조사원 구성현황 및 교육 실적 등은 밀양시와 조합법인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3 임무

2.3.1 지리적표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대표이사, 이사회, 감사, 사무국장, 품질조사원, 조합원(생산자)의 임무는 각각 다음과 같다.

2.3.2 대표이사

- 1) 조합법인을 대표하고 조합법인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조합법인의 업무 총괄
- 2) 품질관리계획서의 수립 및 이사회 상정
- 3) 조합원 및 관계기관에 확정된 품질관리계획 통보
- 4) 품질조사결과에 대한 이사회 상정 및 심의 결과를 해당자에게 통보
- 5) 부정품의 조사계획안 수립
- 6) 품질조사원의 임명

2.3.3 이사회

- 1) 품질관리계획의 심의·확정
- 2) 품질조사결과 및 조치방법의 심의
- 3) 이의신청 및 표시 정지자에 대한 재허용 여부 심의

- 4) 품질관리교육계획 결정
- 5) 지리적표시품의 홍보 및 관측활동
- 6) 품질조사원 추천

2.3.4 감사

- 1)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품질관리 등에 대한 감사업무 총괄 수행
- 2) 회계연도마다 조합법인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에 대한 1회 이상 감사

2.3.5 사무국장

- 1) 품질조사원 교육·관리
- 2) 지리적표시품 포장재 관리
- 3) 지리적표시제 관련 사무업무 총괄
- 4) 자체품질기준 위반 신고 접수 등
- 5) 조합법인 지정시설(지리적표시품 상품화 시설) 현황 관리

2.3.6 품질조사원

- 1) 지리적표시품의 품질관리 준수여부 관리
- 2) 시정명령·출하정지 등 조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 3) 조합법인(지리적표시품 상품화 시설) 지정시설 기준 준수 여부 관리

2.3.7 조합원 및 생산자

- 1) 자체품질기준, 등급기준, 표시사항의 준수
- 2)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과정 기록부 작성
- 3) 시료수거 및 분석기관에 분석 의뢰
- 4) 부정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감시 및 신고
- 5) 지리적표시품의 원산지 관리

2.3.8 품질조사원의 자격·임명 및 교육

1) 임명

- 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조사원을 두며, 품질조사원은 이사회가 추천을 받아 대표이사가 임명하고, 품질조사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30명 이내로 임명·운용하되 지역형편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나) 자격

품질조사원은 밀양시가 주관하고 조합법인이 주최하는 지리적표시품 품질조사원 교육을 연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한 자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① 밀양대추 생산에 6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한 자
- ② 밀양시 지역 관내 대추를 생산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의 직원 또는 밀양대추 관련 민간단체의 조합원으로서 단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다) 품질조사원 교육

- ① 조합법인은 밀양시(대추 지리적표시 담당자)와 협의하여 연1회 이상 밀양대추 지리적표시품 품질조사원 교육을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조합법인은 매년 품질조사원의 지리적표시품 품질조사원 교육실적 등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품질조사원 구성이 변동이 있을 시 이를 반영하여 품질조사원 명단을 신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 주체

3.1 품질조사 및 관리

3.1.1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조사는 조합법인이 총괄·관리하여 실시하며, 자체품질기준에 명시된 품질조사 기간에 조합법인이 임명한 품질조사원이 조사대상 현지에 연 1회 이상(조합원수에 따른 지역별 표본 선별조사)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2. 조합법인은 조사일을 조합원(조사대상)에게 미리 통보하지 말아야 하며, 조사를 마친 품질조사원은 조사결과를 조사 당일에 조합법인(사무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 잔류농약 등의 분석

조합법인은 밀양대추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성분 및 잔류농약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전문분석기관 등의 공신력있는 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4) 품질관리 조사항목

4.1 재배과정 조사

4.1.1 지리적표시품 재배·수확과정에서 생산자(조합원)가 준수해야 할 자체품질기준 준수 여부

- 1) 과원 조성 및 관리
- 2) 수확 등 재배 전 과정

4.1.2 출하과정(저장·포장·출하과정 관리)에서 생산자(조합원)가 준수하여야 할 자체품질기준 준수 여부

5) 품질관리 조사기준

5.1 재배과정 조사

자체품질기준에 명시된 지리적표시품 재배기준을 적용한다.

5.2 품질조사

자체품질기준에 명시된 품질 및 포장기준을 적용한다.

5.3 표시사항 조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표시기준을 적용한다.

5.4 안전성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대추 안전성 적합기준 등 이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6) 품질관리 조사방법 및 절차

6.1 재배단계 조사

6.1.1. 재배관리과정에서 자체품질기준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

6.1.2 조사 시기 : 연중 1회 이상

6.1.3 조사방법 : 조사대상지에 현지 출장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자체기준에 적합여부를 기록을 통한 확인 조사

6.2 출하과정단계 조사

6.2.1 출하과정에서 자체품질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조사

6.2.2 조사시기 : 연중 1회 이상

6.2.3 조사방법 : 조사대상지에 현지 출장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자체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조사

6.3 조사표본수

6.3.1 읍·면별로 다음기준에 따라 조사대상 조합원을 선정하여 조사한다.

6.3.2 가능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조사지를 선정하여 조사한다.

《표 8.2》 조사표본수

모집단의 크기	20인 이하	21~40인	41~60인	61~100인	101인 이상
조사표본수	1인 이상	2인 이상	3인 이상	5인 이상	전체의 5%이상

6.4 조사기록의 관리

6.4.1 조합법인은 품질조사관련 기록(조사실적 대장, 조사표 등)을 사무소에 비치하고, 조합원이나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4.2 대표이사는 품질관리계획서 수립 시 전년도의 품질조사기록의 조사 성적을 참고하여야 한다.

나. 생산품에 대한 품질 사후관리 및 조치 계획 등

1) 생산품에 대한 품질 사후관리

1.1. 지리적표시품 생산시설(조합법인 지정시설) 관리

1.1.1 조합법인은 지리적표시품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리적표시품 생산시설로 인증한 시설현황에 대하여 문서화 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1.2 조합법인은 매년 지리적표시품 생산시설(조합법인 지정시설)현황을 밀양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1.2. 지리적표시품 포장재(제작, 지급, 사용량, 재고량) 관리

1.2.1 조합법인은 각 조합원의 재배면적, 생산계획량 등을 취합하여 적정량의 수량을 산정하여야 지리적표시품 포장재를 일괄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 전 밀양시(밀양대추 지리적표시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2.2 조합법인은 지리적표시품 포장재 지급 시 포장재(재사용, 판매, 양도 금지 등) 관리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반드시 교육하여야 한다.

1.3. 최종 생산품(지리적표시품) 관리

1.3.1 조합법인은 선별을 마친 지리적표시 대상 제품에 대하여 자체 품질기준(품질, 포장, 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1) 자체품질기준의 품질기준(등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2) 자체품질기준의 포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3) 원산지 조사를 통한 타 지역 대추의 유입여부
- 4) 자체품질기준의 의무표시사항 및 금지표시사항의 표시 등 표시의 적정성 여부

1.3.2 조합법인은 출하 전 저장·보관 중의 지리적표시품을 대상으로 자체품질기준(저장, 보관 등)의 준수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1) 자체품질기준의 저장기준(저장고, 저장환경, 위생 등)에 적합한지 여부
- 2) 일반품과 지리적표시품의 구분관리 기준 등

1.3.3 최종 생산품(지리적표시품)에 대한 품질관리 조사는 조합법인이 총괄·관리하여 실시하고, 자체품질기준에 명시된 품질조사 기간에 조합법인이 임

명한 품질조사원이 조사대상 현지에 연 1회 이상(조합원수에 따른 지역별 표본 선발조사)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최종 생산품에 대한 품질 조사 시 밀양시청 대추 지리적표시 담당자 입회하여 실시한다.

밀양대추 품질 사후관리 조사 결과 보고서		밀양시	
조사자 (품질조사원) :			
1. 조사일시		2. 조사장소	
1. 지리적표시품 생산시설 관리 이행 사항 2. 지리적표시품 포장재 관리 이행사항 3. 지리적표시품 품질 사후관리 기준 이행 사항 4. 종합의견			
첨부 : 관계 증거자료 1부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조사원 : (서명) 밀양시청 : (서명)			

《그림 8.2》 밀양대추 품질 사후관리 결과 보고서 (밀양시 입회 하 품질조사원 조사)

1.3.4 조합법인은 조사일을 조합원(조사대상)에게 미리 통보하지 말아야 하며, 조사를 마친 품질조사원은 조사결과를 조사 당일에 조합법인(사무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 (생산자, 품질조사원)

1.4.1 조합법인 밀양시와 협의하여 연1회 이상 조합원 및 관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리적표시품 생산·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지리적표시제·안정성·원산지관리·품질향상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4.2 조합법인은 밀양시와 협의하여 연1회 이상 지리적표시품 품질조사원을

대상으로 한 지리적표시품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조합법인은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관내 유관기관(밀양시청, 밀양시농업기술센터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1.6 판매활성화 방안 강구

1.6.1 조합법인은 지리적표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판로 확보에 힘쓰고 이를 위한 예산을 매년 편성한다.

1.6.2 조합법인은 지리적표시품의 홍보활동을 위한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신문, 잡지, 텔레비전, 안내책자, 전단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한다.

1.7 지리적표시 관련 단체 가입 활동

사단법인 한국지리적표시특산품연합회에 가입하여 본 제도의 취지와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한다.

2) 품질관리 조사결과 조치

2.1. 일반 기준

2.1.1 지리적표시를 위반한 조합원은 《표 8.3》 지리적표시 위반자 처분기준에 의해 처분하고 등록기관인 산림청에 신고하고, 고의 과실이나 위반의 경중을 판단하여 법 제37조(손해배상청구권 등)에 의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2.1.2 지리적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36조에 의거 권리침해의 금지를 청구하고, 등록기관인 산림청에 신고하며 고의 과실이나 위반의 경중을 판단하여 법 제37조에 의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2.2 개별 기준

2.2.1 지리적표시를 위반한 조합원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표 8.3》 지리적표시 위반자 처분기준

처분 대상	처분기준
1. 자체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대추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밀양대추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조합원 제명
2.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대추를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조합원 제명
3. 지리적표시 포장·용기·선전물 등을 관리소홀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유출시킨 자	○ 1차 위반 - 경고 ○ 2차 위반 - 조합원 제명

2.2.2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은 조합원에게 직접 통보한다.

2.3 상품회수 · 표시삭제

2.3.1 표시정지 조치된 부적합품은 즉시 회수하도록 조치한다.

2.3.2 부적합품에 대한 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생산자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 또는 용기(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가 부착된 제품에 대해서만 그 표시를 삭제한다.

2.4 조사결과 통보 및 이의 제기

2.4.1 경고, 제명 등 조치된 사항 등은 즉시 생산자(조합원)에게 통보한다.

2.4.2 해당 상품의 생산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이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나 심의 및 결과통보를 완료한다.

2.5 조치불응자에 대한 조치

2.5.1 위반 처분 대상자는 처분기간 종료 후 <지리적표시품 자체품질기준 관리

준수>조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3점 이하일 경우 처분기준 항목에 따라 대표이사, 이사회 등의 승인을 거쳐 재 처분할 수 있다.

2.5.2 <지리적표시품 자체품질기준 관리준수>는 품질조사원, 사무국장 등이 수행한다.

자체품질기준 관리준수	가. 자체품질기준에 준수 및 위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체제가 우수한 경우는 5점 나. 자체품질기준에 준수 및 위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체제가 양호한 경우는 4점 다. 자체품질기준에 준수 및 위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체제가 미흡한 경우는 3점 라. '다'항목에 미달하는 경우
----------------	--

2.5.3 처분기간 이후 생산자가 지리적표시품 자체품질기준 관리준수 조사에 불응할 경우, 조합법인은 불응자에 대하여 지리적표시품 출하자격을 5년간 금지시킨다.

지리적표시품 생산량 기록대장 (예시)

· 조합원명 : · 전 화 : · 주 소 : · 식 재 면 적(ha) : · 생산 계획량(kg) :					
연월일	생 산 량 (kg)			확인	비고
	별초	특초	상초		
계					

지리적표시품 출하량 기록대장(예시)

· 조합원명 : · 전 화 : · 주 소 : · 식 재 면 적(ha) : · 생산 계획량(kg) :					
연월일	출 하 량 (kg)			출하처	품질 조사원 (확인)
	별초	특초	상초		
계					

지리적표시품 판매량 기록대장(예시)

(단위 : kg)

판매 연월일	판매처	판매량	생산자	확인 (품질조사원)	비고
계					

지리적표시품 포장재 관리대장(예시)

월 일	종류	사용	사용자	확인	비고
계					

지리적표시품 생산과정 조사표(예시)			
1. 조사 일시 : 년 월 일			
2. 조사 장소 :			
성 명		주소	
3. 조사결과			
조 사 항 목	조 사 결 과		
과원 조성			
나무 생육상태			
재배관리의 적정성			
선별·건조과정의 적정성			
생산과정 기록부 작성			
기 타			
4. 종합의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div>			
조 사 원 :		(서명 또는 인)	

<h2 style="margin: 0;">지리적표시품 출하(포장)과정 조사표(예시)</h2>			
1. 조사일시 :			
2. 조사대상			
성 명		재배지 (소재지)	
3. 조사결과			
조 사 항 목	조 사 결 과		
품 위			
중 량			
포장상태			
표시사항			
기 타			
4. 종합의견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20px 0;">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20px 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20px 0;">조 사 자 : (서명 또는 인)</p>			